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주 의, 권 고

제 목 부당이득금 소송 후속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QQ#

조 치 기 관 ▲▲#QQ#▲▲▲▲, ##▲▲#QQ###▲▲#QQ#

감 사 대 상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소속 : #####(▲▲▲▲)

1. 사건 개요

#▲▲#QQ#▲▲▲▲는 198&&년경 ##시 @동 %-1 도로 QQQm²(이하 ‘이사건 토지’) 일대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 토지는 소송을 제기한 ■■■의 토지로서 ■■■은 #▲▲#QQ#▲▲▲▲가 법률상 권원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 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2015.10.15.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QQ#▲▲▲▲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QQ#▲▲▲▲는 소송 결과 승소판결 확정 이후 패소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할 직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지 않아 그 임무를 위배하여 #▲▲#QQ#▲▲▲▲에는 총 3,515,700원 상당의 예산 사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로 신고, 문체부를 경유하여 예술위 감사실로 사건이 이첩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3항에 의하면 ‘국가 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위 사건의 경우, 2015년도에 소재기된 사건으로 당시 #▲▲▲#QQ#▲▲▲▲▲ 소송업무를 진행한 QQQ ▲▲은 2015.10.30. 착수금 3,850,000원을 지급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2017.4.10.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의해 846,800원의 소송비용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결정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판결과 같은 결정으로서 만일 패소자가 이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금을 승소자에게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거 패소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신청제도(민사집행법 제61조~69조)」를 두고 있으므로, 승소자가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패소자 주소지 관할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이후 법원이 패소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게 되면, 패소자의 재산목록 제출문서를 보고 강제집행(압류 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밖에도 「재산조회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을 하여 패소자 명의의 재산(금융자료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승소자가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규정하는 강제집행절차를 하여도 패소자가 순순히 소송비용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상 더 이상 집행방법은 없어, 그 후 승소자는 패소자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송의 소멸시효가 10년인 바,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위 판결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본안판결에 대하여 시효연장 소송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의 의견 및 주장]

#▲▲#QQ#▲▲▲ QQ▲ ▲▲은 20YY년 4월 &&일 입사하였고, 20###년부터 회사의 자산·토지·총무업무 담당자로서 20YY년 10월 ▲▲일 토지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후 20▲▲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당이득금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본인은 소송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기에 소송비용 청구 등 후속조치에 미흡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거, 채무자의 채권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률위반 여부 판단]

한편, 신고자가 ‘소송비용 예산낭비 의혹’으로 제시한 7가지 법령(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②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3, ⑤민법 제165조의 1, ⑥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⑦지방공무원법 제 48조)을 가지고 위 사안을 살펴보면,

#▲▲#QQ#▲▲▲▲▲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대한민국 문화예술진흥지원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의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 #####은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의하여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의 죄를 범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패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한 &&& ▲▲▲ 본안소송이 확정되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이를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지금이라도 즉시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등 민사집행을 하여 소송비용 회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QQ#▲▲▲▲▲▲ @@@은

- ① 부당이득금 소송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팀 #####트 ▲▲ @@@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주의]
- ②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 등 후속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